

# 2006년에 달라진 사료관련 제도

06년, 사료관련 제도는 무엇이 달라질까? 「피드저널」이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조정래 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료관련 제도들을 돌아보았다.

## ●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제조시설자금 지원사업

우선 가장 큰 틀에서 변하는 것은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제조시설 지원사업이 종합지원 방식인 「사료산업 종합지원」지원체제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06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06년부터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제조시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를 통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농림부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사업별 신청에 따라 탄력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개선되었다. 그동안 원료구매자금은 관련 단체를 통해 신청토록 하였으나 시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사업희망자의 편리성을 도모한 것이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예산안)	'07~'13	
사업량	130	112	20	5	38	44	-	
사업비	계	38,327	32,176	45,278	31,888	61,738	60,581	2,816
	보 조	-	-	-	-	-	-	-
	융 자	38,327	29,896	44,511	31,213	52,333	52,571	2,682
	지방비	-	-	-	-	-	-	134
	자부담	-	2,280	767	675	9,405	8,010	

※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매 자금의 합계(예산기준)

◆ 사료제조시설지원

- 지원대상

-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 :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일반업체, 농축협·영농조합법인·양축농가
  - ※ 양축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던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지원
  - ※ 남은음식물을 사료화 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소당 사업비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 4%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지원

◆ 사료원료 구매지원

- 지원대상자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개소당 사업비 : 지원요청 업체별 원료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지원조건 : 1년거치, 일시상환, 연 4%

※ 사료원료구매자금 용도로 배정 받은 지원액은 원료구매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2006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44	60,581	52,571	-	52,571	8,010	
사료제조시설	14	26,700	18,690	-	18,690	8,010	
사료원료구매	30	33,881	33,881	-	33,881	-	

● 사료산업 종합지원 대출취급기관 확대 및 금리인하

그동안 농협으로 한정하였던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업체의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리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해 3%, 일반업체에 대하여는 4%로 인하된다.

※ 원료구매자금 : (05) 5.5% → (06) 3~4%

제조시설자금 : (05) 5% → (06) 3~4%

### ● 사료검사 및 검정('06년 사료검정계획 공문 참조)

- BSE 관련 검정기관 이관 추진
  - 현재 농진청 축산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BSE 관련 검정물량의 약 50%를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실시('07년 부터는 전량 농관원에서 점정)
- 양어용배합사료 검사 강화
  - 양어용 배합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정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07년도 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한 검정은 해수부산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토록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07년도 검정 실시를 위해 '06년 상반기중 검정기관 지정을 받고, 하반기에는 농관원과 더불어 예비검정을 실시기로 한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시도에서는 양어용 배합사료 시료 채취시 1점을 추가로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송부하여 예비검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 수입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대상품목 및 관세 조정

-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품목 축소 및 일부품목 관세 인상
  -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감축계획(재경부)에 따라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유지를 기본관세(5% → 8%)로 전환하고, 대두 및 매니옥은 1%로 인상된다.
  - ※ 할당관세 적용품목 : ('05) 13품목 → ('06) 12품목
  - 할당관세 인상품목(매니옥, 대두) : ('05) 0% → ('06) 1%

### ● 사료에 대한 부가세영세율적용기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농·축산·임·어업에 종사하는 자에 공급되는 사료, 축산기자재의 영세율 특례규정」 적용기간이 '05.12.31까지 만료되었으나 '08.12.31까지 3년간 재 연장 조치되어 농가에서는 연간 약 4,972억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㉟